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6. 7. .
국회운영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6년 3월 24일, 김남근의원 등 24인

나. 회부일자: 2026년 3월 25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2차 국회운영위원회(2026.07.27.)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부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국회운영개선소위(2026.07.28.)

상정, 축조심사, 의결(대안반영폐기)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3차 국회운영위원회(2026.07.29.)

상정, 소위심사보고, 의결(대안반영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김남근의원)

법제사법위원회는 「국회법」 제37조에 의해 법률안·국회규칙안의

체계·형식과 자구의 심사(이하 “체계·자구 심사”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소관업무로 하고 있고, 「국회법」 제86조의2는 다른 위원회에서 법률안의 심사를 마치거나 입안을 하였을 때에는 필요적으로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여 체계와 자구에 대한 심사를 거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다른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의결된 법률안임에도 불구하고 체계·자구 심사의 범위를 넘어 그 내용을 변경하거나 내용 변경을 둘러싼 이견으로 법률안이 장기간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되는 문제가 발생함으로써 체계등심사권과 소관 상임위원회의 입법권 간 충돌 내지 갈등 소지가 제기되기도 함.

또한, 법제사법위원회는 「민법」, 「형법」, 「상법」,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등의 기본법과 파산·회생, 임대차, 국제법무 등 많은 민생법률들에 대한 법안심사 업무와 예산안 심사 등의 업무에 집중해야 하나, 이러한 부수적 업무인 타 상임위 법률안에 대한 체계·자구 심사의 처리 과정에서의 충돌과 갈등으로 인하여 기본업무의 수행에 큰 지장을 받고 있음. 이렇게 법제사법위원회가 타 상임위에서 의결한 법률안에 대해 체계·자구 심사를 이유로 내용을 변경하거나 본회의 상정으로 가지 못하도록 하게 되면, 사실상 법제사법위원회가 양원제 국가의 상원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됨으로써 단원제 국회를 예정하고 있는 헌법에 위반되는 위헌적인 상황이 초래되기도 함.

이에, 체계·자구심사위원회를 별도로 신설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법률안에 대한 체계·자구 심사를 전담하게 하고 법제처 등 법률안에 대한 체계·형식 및 자구 심사 전문기관의 지원을 받아 보다 전문적인 체계·자구 심사를 할 수 있도록 함. 아울러, 체계·형식 및 자구 심사기간을 30일로 명시하여 입법과정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체계·자구심사위원회에서 법률안이 장기간 체류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소관 상임위원회의 입법권과 균형을 제도화하고자 함.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생략

4. 대체토론의 요지

없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국회운영개선소위원회 위원장 천준호)

대안을 제안하고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

6. 찬반토론의 요지

제도 도입취지와 달리 신속처리대상안건의 처리 속도가 평균적인 의안 처리 속도보다 느리므로 심사기한을 단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과, 개정안과 같이 신속처리대상안건의 심사기한을 단축하는 경우 속고가 줄어들고 소수당이 무력화되는 측면이 있다는 의견이 있었음.

7. 심사결과

대안을 제안하고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

8. 소수의견 요지

해당사항 없음

9. 관련 위원회 의견 요지

해당사항 없음